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	관 의	장
람			



제919호 2015년 1월 30일(금)

공 고

○ 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~~~~~ 2

회 람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공고 제2015-76호

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(신고)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.

2015년 1월 30일

속 초 시 장

가. 공 고 명 : 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나. 도로위치 : 도로지정 조서 참조

다. 공고기간 : 2015. 1. 30. ~ 2. 24. (25일간)

라. 도로지정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²)		2 0 -1	건축허가번호	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소유자	(건축허가일)	비고
강원도 속초시 도문동	1442	전	1,279	200	정영숙	2015-건축디자 인과-신축신고 -제6호 (2015. 1. 20.)	건축주 : 정영숙
	1435	전	1,213	139	이선옥		

마. 공고방법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
바. 관계도서 :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비치(열람가능)

사. 문의사항 : 건축디자인과 건축행정팀(033-639-2256)

위치도 및 현황도

•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 치 도

축 척 NONE

